

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수신 전 조합원사 【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】

참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담당

제목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 개정(안)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

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기획재정부에서 ‘17.4.19(수) 입법예고한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아 래 -

배출권 거래 활성화(안 제3조, 제12조)

배출권의 과도한 이월 업체는 할당량 제한

배출권 차입 한도 확대 및 차입비율 제한(안 제36조)

배출권 차입 한도 15%로 확대(기존 10%)

차입 한도를 전년도 차입 비율의 50%로 한정

3. 이에 동 입법예고(안)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코자 하오니, 불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’17.5.24(수) 까지 제출(FAX 02-718-7171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(안)은 조합홈페이지(자료광장-법령광장)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불 임 :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. 끝.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



대리	김종호	팀장	한인성	사무국장	장기석	부이사장	진원기	이사장	박무룡
협조자									
시행	한공조 - 242 호			(2017. 5. 18)			접수		
우	07573	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6, 11층(등촌동, 우리벤처타운)						/ www.krema.kr	
전화	02-718-7900	전송	02-718-7171	/ krema@krema.kr			/ 비공개		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(안) 관련 의견 요청

입법예고(안)	수정 건의(안)	사유

2017. . .

업체명 :

담당자 :

연락처 :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귀중